

개방형직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3쪽중 제1쪽)

I. 기본사항

1. 소속기관	2. 직위명	3. 직급
파주시 (파주보건소)	파주보건소장	지방경력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4호)
4. 주요업무내용		5. 비 중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집행		10%
·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10%
· 의료인 및 의료기관, 약사 및 약국 등 지도 및 응급의료 및 보건실험 또는 검사 등		20%
·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질병관리 및 건강증진, 보건교육 등		20%
·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사업에 관한 사항		10%
· 노인보건 및 정신보건, 보건의료 취약계층 방문 등 보건의료사업		10%
·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그밖에 보건의료 향상, 증진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20%

II. 직무수행요건

1. 임용자격 요건	
가. 필수요건	(* 법령 등에 근거한 필수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반드시 표기) ① 필수 자격증 : [] 무, [○] 유 (종류 및 등급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면허 소지자) ※ 단, 의사 면허 소지자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면허 소지자 응시 가능 ② 기타 필수요건 : [] 무, [○] 유 - 비의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 등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보건소장) ①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 람”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2.> 1.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 가.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면허 소지자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이하 “보건등” 이라 한다) 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이면서 치과의사·한의사·간호 사·조산사·약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 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II. 직무수행요건

1. 임용자격 요건

가. 필수요건	나.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 1)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개방형 직위), 제31조 (결격사유) 요건을 충족하는 자
---------	--

나. 경력 또는 실적요건	1) 일반요건
	○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2) 자격증 요건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3) 경력요건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10mm×297mm[백상지 80g/㎡]

(3쪽중 제2쪽)

2. 관련분야	•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3. 특별요건	① 자격증 : [] 무, [] 유 () ② 외국어 : ③ 정보화능력 : ④ 기타 특별요건 : [] 무, [] 유 ()

작성요령

I. 기본사항

1. 소속기관명에는 해당 직위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명칭과 직제상의 명칭을 기입함
 2. 임용예정 직위명은 직제상의 직위명을 기입함
 3. 직급은 해당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직급을 모두 정확히 기입함
 - 1급~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연구·지도관, 특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일반직 1급~4급의 상당 계급을 괄호 안에 표시함
- ※ (예시) 1) 문화관광국장 : (행정) 지방부이사관, 임기제
2) 보건환경연구원장 : (보건·환경·가축위생) 지방보건연구원(3급 상당), 임기제
4. 주요 업무내용
 - 조직목표 달성과 연관되는 주요 업무내용을 기술함
 - 직제, 사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을 기초로 해당 직위에 임용되는 자가 수행해야 할 단위업무를 기술하며, 배열순서는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순으로 7개 이상 기재
- ※ (예시) 문화관광국장의 경우, ()안은 비중임
1. 종합관광시책의 입안 및 관광법규의 연구·정비(15)
 2. 해외 관광시장별 마케팅전략 수립(외래관광객 유치)(15)
 3. 관광지, 7대 문화관광권 및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15)
 4. 관광서비스 기반 구축(15)
 5.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관광상품 개발 확대(10)
 6.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운영(8)
 7. 관광부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집행(8)
 8.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사업 추진(5)
 9. 관광부문 외국인 투자유치(5)
 10. 남북 관광교류 협력(4)